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2023. 7. 18. 개정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근무시간 외 직원의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(안 제11조 신설)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 범위를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, 연가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(안 제12조 및 별표 4)

-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(안 제16조제 9항 신설)
-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,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(별표 5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시간 外사생활 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, 대통령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2023. 7. 18 개정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조 항	구 분	개정안 주요내용
제11조(사생활 보장)	신 설	-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 ※ 재난발생, 긴급상황 대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외
제12조(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)	개 정	- 연가가산대상 : 재직기간 2년 미만 → 5년 미만으로 확대 - 연가가산일수 : 2일 → 3일로 확대
제16조(특별휴가)제9항	신 설	-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게 10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
[별표 5] 경조사별 휴가일수	신 설	-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15일 -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1일
	개 정	-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→ 5일로 확대

- 참고로 근무시간 外 사생활 보장 규정 자치구는 서울시 및 6개구이고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노원구(10일), 종로구(3일) 2개구이며,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서울시 및 5개구에서 특별휴가를 1일을 부여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13개구에서 3일을 부여하고 서울시 및 12개구에서는 5일을 부여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